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2016. 5. 18)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6년 5월 2일(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5년 5월 4일(수)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 관리)
제30조(정원의 규정)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 동(同)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계획」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全) 동 시행 및 마포구 행정기구 일부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전담인력 정원 증원 등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 가. 마포구 정원을 “1,305명”에서 “1,38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6명”에서 “1,357명”으로 정원 81명을 증원함. (안 제2조)
- 행정자치부 연차별 확충계획 순증인력 증원 : 8명(사회복지 7명, 행정 1명)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시행에 따른 증원 : 73명(사회복지)

『마포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증원계획(행정자치부)』 (단위 : 명)

구분	2015~2017년 총 확충규모				2016년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계획				
	총계	복지직 증원	행정직 증원	인력구조 개선	16년 소계	복지직 증원	행정직 증원	행정직 재배치	자연결원 대체
서울시	658	393	135	130	260	145	50	33	32
마포구	14	8	3	3	9	7	1	1	-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표에 반영함.(안 별표 3) (단위 : 명)

직급별 기관별	현 행	개 정 안	증감
총 계	1,305	1,386	81
정무직	1	1	0
일반직 계	1,298	1,379	81
3급	1	1	0
4급	7	7	0
5급	58	59	1
6급 이하	1,231	1,311	80
전문경력관	1	1	0
별정직 계	5	5	0
5급 상당	2	2	0
6급 상당 이하	3	3	0
연구직	1	1	0

[검토의견]

- 동(同)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그 동안 시범동 2개동(아현동, 상암동)을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를 전(全) 동으로 확대·시행하고 마포구 행정기구 일부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전담인력 증원으로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마포구 정원을 “1,305명”에서 “1,38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6명”에서 “1,357명”으로 증원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현 행	개 정 안	증감
총 계	1,305	1,386	81
집행기관	1,276	1,357	81
구의회사무국	29	29	0

안 별표 3에서는 총 계란, 일반직 계란 및 6급 이하 계란을 다음과 같이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표에 반영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현 행	개 정 안	증감
총 계	1,305	1,386	81
5급	58	59	1
6급 이하	1,231	1,311	80
기 타(정무직, 3~4급, 전문 경력관, 별정직, 연구직 등)	16	16	0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2014.12.8.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2016년 마포구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복지담당 공무원 8명(복지직 7명, 행정직 1명)을 증원시키고 행정직 1명을 재배치(전환배치)하는 등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확대시행을 위해, 동조례안 별표 2에서 정원 “1,305명”을 “1,386명”으로 조정하고, 마포구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6명”에서 “1,357명”으로 81명 증가시키고, 별표 3에서는 정원 “1,305명”을 “1,386명”으로 증가하고, 5급 “58명”을 “59명”으로 1명, 6급은 “1,231명”에서 “1,311명”으로 80명을 증가하여 총 8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임.

- 사회복지인력 확충인력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은 2016년도 마포구 기준 인건비는 1,107억 8,859만 9천원이며, 이중 1,037억 3,195만 5천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인력 증원에 따른 부담액은 81명/ 23억 4,370만 7천원으로 이중 자치구 부담률 25%를 적용하여 금년 예산에 반영한 바, 이번 사회복지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인력증원 시행년도부터 3년간 만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향후 계속적인 사회복지인력 증원에는 예산확보에 문제가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동(同) 조례는 2016.4.21.~ 4.26.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도 없으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됨이 없고, 또한 이번 조례개정은 마포구 행정기구 일부 개편 및 그 간 시범동에서 시행해오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전(全) 동 확대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전담인력 정원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포구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됨.

관 계 법 규

지방자치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4.7.] [대통령령 제26183호, 2015.4.7]

-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08.7.3.〉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6.29.〉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자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최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겹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15.7.1.)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996호, 2015.5.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3>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305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1.11, 2012.2.23, 2012.12.31, 2014.3.20, 2014.5.8, 2015.5.28>

1. 집행기관의 정원: 1,276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9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8>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8>

부칙 <제971호, 2014.5.8>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3명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③(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중 식품안전추진반장 5급 1명은 201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칙(201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정원 29명은 초과 현원이 해소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증원되는 일반직 40명 중 29명은 기능직 초과 현원이 해소되는 2012년 12월 31일 이후 충원한다.

부칙(2011.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제854호, 2012. 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제2조 각 호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제874호, 2012. 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90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23호, 2013.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42호, 2013.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안전행정국(총무과)의 사무명 제1호가목 중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7급이하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을 “별정직·임기제”
로 한다.

부칙<조례 제952호, 2014.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중 5급 1명은
2014.4.1.부터 2016.12.31.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971호, 2014.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중 6급 이하 1명은
2015년 3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996호, 2015.5.28>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자료

〈 마포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증원계획(행정자치부) 〉 (단위 : 명)

구분	2015~2017년 총 확충규모				2016년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계획				
	총계	복지직 증원	행정직 증원	인력구조 개선	16년 소계	복지직 증원	행정직 증원	행정직 재배치	자연결원 대체
서울시	658	393	135	130	260	145	50	33	32
마포구	14	8	3	3	9	7	1	1	-

□ 우리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배정인력 : 9명(순증 : 8명)

- 복지직 7명, 행정직 1명, 행정직 재배치 1명

- 직렬별 전문성 활용 및 직렬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복지직과 행정직으로 충원

□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사항

-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순증하는 신규 복지직 인건비를 채용시기로부터 3년간 국고보조(보건복지부)

- 연도별 순증 규모에 따라 각 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

- 기준인력 별도 산정 및 사후정산제 실시

- 순증분에 대해 '15년 ~ '17년 간 한시로 기준인력 별도 산정
(일반직/소방직 → 복지직 순증분/복지기능행정직 순증분/일반직/소방직)

- 당해 연도 순증 실적이 미흡할 경우 차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시
120% 회수

※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 방식

- 순증인력(정원증원) : 국·시·구비 50:25:25 매칭
 - 채용시기부터 3년간 지원
- 개별급여 인력 : 국·시·구비 50:25:25 매칭
 - '14.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수급자 보장·관리
를 위한 순증인력
- 기존인력 : 시·구비 50:50
 - 위 대상 외 기존 사회복지직 인력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증원 인력 : 시·구비 75:25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동 시행('16.7.)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 마포구 복지부서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직원 현황

(16.5.1. 기준)

연번	부서(동)	전 직렬				사회 복지직 (정 원)	사회 복지직 (증 원 시)
		정 원	현 원	별도정원	실현원		
	계	387	425.5	40.5	385	96	176
1	복지행정과	23	22		22	11	11
2	생활보장과	31	36.5	4.5	32	20	20
3	어르신복지정책과	22	24	2	22	11	11
4	가정복지과	27	30	4	26	8	8
5	공덕동	20	22	2	20	4	11
6	아현동	24	26	1	25	5	8
7	도화동	16	18	2	16	2	7
8	용강동	16	22	5	17	2	6
9	대흥동	16	16	2	14	2	6
10	염리동	16	19	3	16	2	7
11	신수동	16	19	3	16	2	7
12	서강동	17	18	1	17	3	8
13	서교동	20	24	3	21	2	7
14	합정동	16	17	1	16	2	7
15	망원1동	16	19	3	16	3	9
16	망원2동	16	15		15	2	7
17	연남동	16	16		16	2	6
18	성산1동	16	18	2	16	2	7
19	성산2동	21	23	2	21	6	14
20	상암동	22	21		21	5	9